

【붙임 2】 채용우대 지원자격 세부내용

구 분	지 원 자 격
장애인 (제한경쟁)	◇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사무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취업지원 대상자* (서류전형 및 면접 가점)	◇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 ◇ 『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16조 ◇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◇ 『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 ◇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9조 ◇ 『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7조의9 <div style="float: right; margin-left: 20px;">]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</div>
다문화가족 (면접 가점)	◇ 『다문화가족지원법』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-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→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만 지원 가능 -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(한국어능력시험(TOPIK) 5급 이상)
북한이탈주민 (면접 가점)	◇ 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 -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에 주소, 직계 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기사자격증 소지자 (서류전형 가점)	◇ 『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』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아래 자격증 소지자 - 토목: 기사(토목, 건설재료시험,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, 도시계획 중 1) 자격증 - 건축: 기사(건축, 실내건축 중 1) 자격증
고급자격증 소지자 (서류전형 면제, 면접 가점)	◇ 『변호사법』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공인회계사법』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세무사법』 제3조에 의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』 제11조에 의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법무사법』 제4조에 의한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공인노무사법』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기술사법』 제2조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◇ 『건축사법』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